

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6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7월 19일
발 의 자: 김인제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영철, 김원중, 김지향, 박영한, 신복자, 왕정순, 유만희, 이민옥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 임종국, 최민규, 최재란, 한·신, 홍국표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정('22.4.26.제정 ' 23.4.27.시행)됨에 따라 시·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요청과 포상,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,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는 조례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서울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고 있어 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필요
- 이에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 직접 지원과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함 (안 제2조).
- 나. 조례의 적용 대상과 적용범위를 명시함(안 제4조).
- 다. 조례에 사용되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내용과 시장이 자율방범대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
라. 자율방범연합회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조금 및 운영비 교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,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 .

바. 현행 조례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둠(부칙 경과조치 -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·범죄예방·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대, 자율방범연합대, 자율방범연합회에 적용한다.

1.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
2.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연합대”라 한다)
3.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

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

제5조(자율방범활동) 자율방범대는 법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(이하 “자율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
3. 서울특별시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시장이 사회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6조(연합회의 기능)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
2.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지도·지원·연락 및 조정
3. 지역 합동 순찰 및 계도 활동
4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공익사업
5.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
6.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
7.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

제7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, 연합대 및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·장비·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2.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

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
3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
4.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

5.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평가하고,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보조금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